『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동작구에서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 위탁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에 적용되며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과 본 과업 지시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은 우리구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처리 민간위탁 용역(연간단가)
2. 처리예정량 : 3,300톤(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과 업 기 간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Ⅱ. 과업의 목적

동작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위탁(소각)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 하는데 있다.

Ⅲ. 과업의 범위

동작구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소각류)

Ⅳ.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이행사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일까지 이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시까지 처리단가의 변동 없이 연장 처리 할 수 있다.

2. 과업의 의무 및 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는 동작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계약에 적용한다.

나. 폐기물의 운반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소각시설(적환장)까지 “발주기관”이 운반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발생시는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또한, 폐기물의 반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상대자”은 폐기물 처리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바. 폐기물의 처리량 확인은 무게단위로 하며, 계량은 “계약 상대방”의 계량기(공인검정을 필한)와 “발주기관”이 설치한 무인계량관리

시스템으로 입고·출고시 중량을 각각 계근하며, 계량 차이(±0.5%) 이상 발생 할 시에는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계량 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사. 폐기물의 연간 처리예정량은 동작구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이후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성상으로 재 위탁 및 매립할 수 없다.

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반입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킬 수 없으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시

1) 2회까지 처리업체 "계약상대자"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2) 3회 계약파기 예정통보

3) 4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시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및 계약 잔여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1. 하자책임관계

과업지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가.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반입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키는 경우

나. 과업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행치 않음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과업지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다.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과업 지시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 권리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3. 대금지급방법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의 청구는 소각확인서등, 관련 제반서류를 납품검사원과 함께 월별로 청구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의무

과업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재판관할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